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 종 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간접지원 정보제공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관명칭 변경(안 제9조)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개정안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이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정비함.
 - 제5조제2항 중 “소요재원”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정비함.
 - 제7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정비함.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기간 내”를 “신고 기간”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정비함.
 - 제9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함.
 - 제12조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정비함.
 -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비함.
 -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
 - 관련 부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